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통 제350-207 (전화번호 75-7643)	전 철 구 정 조 학 전 철 사 회
처치기간		통 계 태 담 관
시행일자		 1977. 8. 16
보존년한		
보 조 기 관	통 계조사 계장 	협 부 주민감사 팀과 안심사 시민과장 문서통계계장
기안책임자	김진국	조 1977. 8. 16 
경 우 신 조 관	문화 공보실장	발 신 통 제
제 목	1977년 상주인구 조사 실시	
<p>1. 서울특별시 상주인구 조사 시행 조례(제396호)에 의거 당 당관 주관하여 법정과 같이 1977년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 하게 되었으니 이 에 따른 아래 사항을 협조 바랍니다.</p>		
<p>가. 협조 사항</p> <p>1) 상주인구 조사 공고</p> <p>가) 근거: 서울특별시 상주인구 조사 시행 조례(제396호) 에 의함.</p> <p>나) 방법: 당시 발행시보 및 일간신문</p> <p>다) 일시: 1977년 9월 25일자 일제의 경제원칙 마) 신문공고 횟수 및 규격: 2회일간지 (초간1, 석간1)</p> <p>각 1회 5단 40행</p> <p>마) 신문공고 예산액: 330,000원</p> <p>바) 공고문안: 법정</p> <p>2) 부도 및 선전 계통</p>		
02-11-1-202 (3) 1980. 11. 10. 20. 11.		190mm×203mm 인쇄 용지 2급, 0.9mm 세 힘 쇠 네트기 술 원(92-0436)
		2183

가) 중요성: 인구의 바닥이 지정계단 경색을 위한 기초 자료일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 서울시 인구의 변동상태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를 요망함.

나) 보도 내용: 별첨 계획안 참조

다) 방 법: 신문 기사화 및 기타 정부 관련 홍보 매체
의 최대 이용 요망

마) 보도 기간: 1) 항 공고와 중복되지 않게 9. 26 기사화

원칙

3) 우표 선전방송 (아티오 및 텔레비죤)

가) 아티오: 77. 9. 29 - 9. 30 사이에 4개 민영방송

에 각 1일 1회씩 2일간 방송

나) 텔레비죤: 77. 9. 29 - 9. 30 (2일간) 사이에 2개

민영 텔레비죤 방송에 각 1회씩 2일간 방송

다) 방송 시간: 매회 아티오 A타임 텔레비죤은 B타임

20초간

마) 문안: 별첨

바) 소요 예산: 517,360 원 이내

4) 극장 유개 시간 이용 방송

가) 대상: 시내 과 극장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공지
사항으로 별첨 문안을 방송하기 조치 요망함.

나) 기간: 77. 9. 29 - 10. 5 (7일간)

다) 방송 시간: 영화 및 기타 공연전후를 이용한 막간

방송

첨 부 1. 상주 인구 조사 실시 계획 (보도자료) 1부.

2. 공고문 안 1부.

3. 우표 방송 (아티오 및 텔레비죤) 원고 1부.

4. 극장 서전문 안 1부. 끝.

서울특별시 통계 제 18호

77. 서울특별시 상주인구 조사실무

총 조사일	1972. 8. 6~8. 29
당첨 가정	별지에 정한 당첨 가정
집	전경 181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오는 10월 1일을 기하여 옛년과 같이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인구의 지역별·연령·상황과 성별 및 민족별 구조 등 인구동태를 파악하여 도시 계획, 환경위생,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품위있고 살기 좋은 생활을 건설과 유산시정의 구현을 위한 계획시책의 기본자료로 쓸 것입니다.

이제 본 조사의 실시에 즈음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조를 바라며 아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조사 기준시점 : 77. 10. 1 0시
2. 조사 기준 : 77. 10. 1~10. 7
3. 조사 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4. 조사 대상 : 서울특별시 전역에 상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일반 외국인
5. 조사 원 : 동사무소 직원
6. 조사 방법 : 전 가구 방문 타계식 조사
7. 근거 법령 : 통계법 및 서울특별시 상주인구 조사 시행조례

계	세	정	과	설	결	월
					재	일

1977. 9. 25.

서울특별시 상주인구 조사

?? 서울시민 조사 실시 계획

(보도자료 *안).

1. 조사 목적

서울시 인구 변동 현상을 지역적으로 파악하고 인구의 연령별 및 성별 구조를 밟아 행정재난 사태를 위한 기본 자료로 제공함.

2. 실시의 법적 근거

가. 통계법에 의한 지정 통계 제7호

나. 서울시 서울시민 조사 시행 조례(제396호)

3. 조사의 기준 시점

1977. 10. 1일 0시 현재

4. 실시 조사 기간: 1977. 10. 1~10. 7 (7일간)

(77. 9. 28 부터 각 가정에 조조표 배부)

5. 조사대상: 서울시 관역에 상시 거주하는 자

(단, 가) 국군 및 유엔군과 전투 경찰대의 주둔지 및 기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특정 지역 제외

나) 고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의 유치장은 직접 조사치 않고 본부에서 조사함.

6. 조사항목: 가구주 성명, 성별, 연령별인구

7. 조사원: 해당 동적원

8.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마다 방문하여 규정된 조사항목을 신고 의무자에게 질문하여 조사표에 기입함.

9. 통보표: 경계기밀원장관의 험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공포

10. 참고사항: 나. 본조사에서 밟아진 사항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다. 본조사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시민들의 협조 후 호명되어 통지 등록인부(세상통계(영남대학), 수강학, 학회개봉자등)의 신고 누락이 없어야 함
2196

(문안 1) 방송 (마티오)

서울특별시에서는 10월 1일부 터 10월 7일까지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의 인구수와 가구수를 정확히 파악하여도 시민 환경의 생교육 주체 수도 등 살기 좋은 새서울 건설 및 유산 시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시정계단 정책의 기본자료로 쓰일 이 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문안 2)

서울특별시에서는 10월 1일부 터 10월 7일까지 서울시 전지역에 걸친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다 많은 통자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한 이 조사가 성공리에 끝날수 있도록 해당동주민이 여러분과 가정을 방문하면 가구원수와 나이를 짜증없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1) 텔레비죤

『서울시 상주인구 조사 실시』

1. 조사일자 : 77년 10월 1일부 터 10월 7일까지

2. 조사사항 : 가구주 성명 성별 및 연령별 인구

3. 조사대상 : 서울시에 상시 거주하는 자 (부재상주자, 외국인 포함)

시민 여러분은 해당동주민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면 조사사항을 정확하게 알며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1) 국장 전전안

서울시에서는 10월 1일부 터 10월 7일 사이에 77년도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서울의 인구변동 상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 해당동주민이 가구마다 직접 방문하여 가구수와 가구원수를 짜증하게 될 것이다. 이 기관증 정부한 인구조사가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